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33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최기상・김한규・김정호

김 윤・백승아・김동아

이수진 · 임미애 · 박은정

천하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58조), 실무상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이러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재판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바,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재 판 진행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이에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등).

법률 제 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음테이프와속기록"을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으로"를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로"로,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를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녹음테이프와속기록을"을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을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로 하며, 같은 항후단 중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을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 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⑤ 당사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의 속기록

-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법원은 제5항에 따라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 를 제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1. 소송관계인(당사자는 제외한다)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청구, 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0조 중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을 "제152조부터 제158조

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까지를"로 한다.

제160조의2(신문 등의 기록)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명할 수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의 조서와의 관계 및 그 폐기 등에 관하여는 제1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3조제1항제2호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를 "영업비밀이"로 한다.

제283조의 제목 중 "조서"를 "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을 "조서 및 속기·녹음과 관련하여는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0조의2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론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지는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신문(訊問)·심문 또는 증거조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 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 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 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 ② -----속기록·녹음물 또 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는 영상녹화물-----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③ 제1항 및 제2항에-----속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 기록 •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 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기록 ·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 ④ 제3<u>항</u>-----

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u><신 설></u>

<u>속기록·녹음물 또</u>
는 영상녹화물을
<u>속기록 ·</u>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⑤ 당사자는 대법원규칙이 정

- 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의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 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에 따라 속기 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 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 1. 소송관계인(당사자는 제외한 다)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

<신 설>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 · 수명법관 또는 수 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 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 계인의 신변에 대한 위해 방 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경우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속 기록 ·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의 사본의 청구, 교부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

규정) -----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제160조의2(신<u>문 등의 기록) ①</u> 법원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는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 거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비밀이 적혀 있는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한다)를 신청할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수 있다.

- 1. (생략)
-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 는 <u>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u>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선) ①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선 등)

	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
	물의 조서와의 관계 및 그 폐
	기 등에 관하여는 제159조제2
	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	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1. (もも) 2
	<u>영업비밀이</u>
	<u> 8 日 리 크 기</u>
	② ~ ⑤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현행과 같음)
- ② ------<u>조서 및 속</u> 기·녹음과 관련하여는 제152 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9조제 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0조 의2를-----